

언론보도와 사생활권의 침해

서정우

연세대 신문방송 교수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의 관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첫째로 언론이란 수많은 권리와 이익 가운데에서 개인권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이며, 두번째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개인권의 침해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이 국가적 법익, 사회적법익, 그리고 개인적 법익 가운데서 개인적인 법익의 보호를 특히 우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론이란 본질상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신문과 방송은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독자와 시청자를 위해 먼저 존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봉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독자나 시청자를 떠난 신문이나 방송은,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인 차원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I. 문제의 제기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의 갈등은 근원적으로 인간본성의 양면성에서부터 연유된다고 보겠다. 인간은 마치 야누스의 얼굴과 같이 알고 있는 바를 남에게 알리려는 표현본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비밀을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보존하려는 비밀본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 인간의 표현본능은 언론자유와 모태가 되었고 인간의 비밀본능은 사생활권의 근원적 기초가 된다. 인간의 표현본능은 한편으로는 남의 일을 알고 하는 정보추구의 본능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면 언론자유는 인간의 정보추구의 본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온 개념이라 하겠다. 인간의 비밀본능은 정보유통으로부터의 가능한 해방과 격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면 사생활권은 많은 경우 정보유통이 활발하면 할수록 문제시되는 정보사회적 개념의 하나에 해당된다.

인간의 경우 표현본능과 비밀본능이 동시에 충족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언론의 경우도 인간본능의 양면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 인간의 표현본능과 비밀본능이 원천적으로 갈등 할 수 밖에 없는 한 인간의 표현본능과 정보추구본능의 필요성에 의해서 생성·발전되어 온 언론은 그 기능 속에 인간의 사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가지게 된다 여기에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의 갈등과 조화의 문제가 제기된다.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의 갈등과 조화의 문제는 그들이 그 속에서 운영되는 전체사회의 상태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사회는 발전도상국가로서 법질서의 후진성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일반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능력 또한 부족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법질서의 후진성에다 한국사회는 두 가지 특수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첫번째 특수상황은 한반도의 분단에서부터 연유되는 언론자유와 상대적위축이 되었고, 두번째 상황은 발전도상국가의 하나로서 빠른 기간 안에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안정을 이룩하려는 국가적 요청이 되겠다.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일반적이고 특수한 상황은 그 속에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의 갈등과 조화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보겠다

II.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의 침해

한국사회에서 사생활권이 언론보도에 의해서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가를 구명하기 전에 우선 사생활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1. 사생활권의 개념과 유형

나라의 기본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 가운데 사생활권 만큼 개념이 뚜렷하게 정리 안된 개념도 드물다. 이 권리는 무형의 권리인 데다가 시대에 따라서, 혹은 지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될수록 더 많은 요소를 포함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미완성의 개념인 것 같다. 프라이버시권리를 인간의 생명권에서 도출한다면 그 권리는 인간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했던 개념이라 보겠다 그러나 이 권리가 저술한 바와 같이 무형의 권리이고 「홀로 가만히 내버려질 수 있는 권리」가 침해할 만한 사회적 변화가 그 동안에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히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법적 개념으로 혹은 권리 개념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것 같다. 이 권리가 외국의 경우 하나의 법적개념으로 문제된 계기는 미국의 헌법학자인 사무엘 워런(Samuel Warren)과 루이스 브랜다이즈(Louis D. Brandeis)가 1980년에 유명한 『프라이버시 권리』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프라이버시개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1)

① 프라이버시권리는 공익에 관계되는 사실 이외의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는다. ② 프라이버시권리는 명예훼손법에 저촉되지 않고 특권적 커뮤니케이션(privileged communication)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공표가 방해받지 않는다. ③ 구두공개에 의해 야기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실제적 해악이 없는 한 법은 어떠한 구제도 부여 하지 않는다. ④ 프라이버시권리는 당해 개인에 의해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한 당해 사실의 공개에 의해서 소멸된다. ⑤ 공개된 사실의 진실성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⑥ 공개자의 무악의성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논문이 발표된 후 최초로 미국에서는 뉴욕주가 1903년에 광고의 목적이나 영업의 목적을 위해 문서에 의한 사전동의 없는 타인의 성명, 초상, 또는 사진의 사용을 금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버지니아, 오클라호마, 그리고 유타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가 비슷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프라이버시권리에 관한 법원의 판결로서는 1902년 뉴욕 주의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되겠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밀가루제조회사가 밀가루의 광고를 위하여 매력적인 가정주부의 사진을 승인 없이 사용한 사건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리를 부인하였다.2) 그 이유는 이러한 경우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할 때 야기되는 가능성이 있는 많은 소송을 우려하고 또한 그것은 입법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법원판례는 1905년에 내린 조지아주 법원의 판례가 되겠다. 이 법원은 피고가

허위증언과 함께 원고의 이름과 사진을 보험광고에 사용함으로써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였다. 그 이유로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3)

「법이 개인에게 그의 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생존하는 권리 이상의 것을 부여한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단지 감옥에 넣지 않는다거나 물리적 간섭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자연법으로부터 유래되고 시민법에 의하여 인식된 자유는 물리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것을 포괄한다」

이렇게 주로 미국에서 발전되어 온 프라이버시권은 드디어 1948년 12월 10일 제 3차 유엔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보장을 받아 세계적인 권리개념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세계인권선언」 제 12조는 아래와 같이 천명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의 사생활, 가족, 가정 및 통신에 관하여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인간은 간섭이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960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인 윌리엄 프로저(William L. Prosser)는 프라이버시권리를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분류·설명하고 있다 4) ① 개인의 사거, 정밀, 혹은 사사에 대한 침입(intrusion 개념) ② 개인의 사적 사항에 대한 당혹케 할 공적폭로(public disclosure 개념) ③ 공중의 눈에 개인을 왜곡시키는 공표(publicity in false light 개념) ④ 개인의 성명 혹은 초상의 영리적 도용(appropriation 개념)

제 1 유형은 개인의 주거에의 무단침입, 전화의 도청, 주거적 개파, 초상의 무단촬영 같은 수법에 의하여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이며, 제 2 유형은 사생활의 공표로서 개인생활과 관련된 일을 함부로 공표하거나 사진의 무단공표, 개인의 병에 관한 상세한 보도, 채무불이행사실의 공표, 임대료 미지불에 관한 모욕적인 공표 및 행위의 경우를 말한다. 제 3 유형은 오해를 자아내는 표현으로서 공중으로 하여금 한 개인을 그릇 판단 또는 오해를 자아내게 하는 표현, 범죄의 혐의가 벗겨진 후에도 개인의 사진이 범죄앨범에 게재 발표되는 경우, 전문에 한 개인의 성명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괄하며, 제 4 유형은 성명, 초상 혹은 기타를 영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한 개인의 인격법익을 무단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5)

한편 프라이버시권리는 학자들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 스스로가 마음대로 생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홀로 내버려질 수 있는 권리」, 「고독하게 있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기의 비밀이 남에게 침해 받지 않을 권리」 등으로도 정의되었다. 이것을 행복추구권, 사사권, 청온권, 그리고 비밀권으로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 6)최근에 와서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을 보호하기 위한 통일되고 단일적인 이익으로 개념, 규정하려는 시도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권리에 대한 침해는 인간존엄 그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로 보아 그러한 기본적 권리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2. 한국에 있어서 사생활권리

한국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리에 대한 법적개념은 권리의식의 미분화상해 국민의 법의식의 후진성, 그리고 법 운용의 미숙 등으로 인하여 아직 분명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10월 25일에 개정된 제 5공화국 헌법 제 16 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5 공화국 헌법이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독립조항으로 규정한 데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배경은 프라이버시권리가 189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법적 개념으로 제기된 이후 서구에서는 독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의식하게 되었고, 두번째 배경은 매스컴의 혁명적 발전을 포함한 정보산업사회의 대두와 더불어 인간의 인격권으로서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발전된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점증하면서 그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지의 제기라고 보겠다. 물론 구헌법에서도 프라이버시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조항(제 8 조), 신체의 자유(제 10 조), 주거의 불가침(제 14 조), 통신의 비밀(제 15 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 32 조제 1 항) 등에서 간접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 5 공화국 헌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리를 보아 명백히 그리고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명문화했다고 보겠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리를 직접 · 간접적으로 보장한 현행헌법의 조항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헌법전문……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한다. (2) 제 9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3) 제 11 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심문,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4) 제 13 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5) 제 15 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 16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7) 제 17 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8) 제 20 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9) 제 21 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 ·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10) 제 22 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11) 제 3 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 5 공화국 헌법의 규정 외에 다른 일반법에서도 개인의 사생활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 법규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1) 형법 제 316 조 (비밀침해) 봉합 혹은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서신, 문서, 또는 도서를 개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317 조 (업무상 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원, 변리사, 계리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는 자가 그 직무처리 중 자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예에는 3 년이 하의 징역이나 금고, 10 년이 하의 자격정지 또는 2 만 5 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제 319 조 (주거침입 · 퇴거불응) ① 사람은 누구나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이 하의 징역 또는 1 만 5 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민법 제 243 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해야 한다.

(5) 경범죄 제 1 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①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거주 혹은 간수하지 아니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내에 잠복한자 ② 타인의 사업 또는 사사에 관하여 신문지, 잡지, 기타 출판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또 는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실의 진위를 막론하고 게재 또는 게재 아니할 것을 약속하여 금품을 받은 자.

이상에서 열거한 조항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법적근거로 평가된다. 특히 사생활권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16 조는 인격권으로 대표되는 사생활권을 각종 침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정부적 혹은 법적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서 지금까지 한국의 사법부가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이렇다 할 판례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사생활권에 관한 법 이론에 초석이 되리라 평가된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그 침해의 양태와 대상이 다분히 명예훼손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양자간의 관계가 경우에 따라서는 불분명 하지만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로서의 명예이익의 보호와 관계되고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원고의 개인적인, 내부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과 관계된다. 따라서 원고에 사생활에 관계된 사실의 공표는 그것이 원고의 미친 사회적 영향과는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평가의 저하를 성립요건으로 하고있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는 사회적 평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사의 공표 등으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또는 자유로운 사생활 영위가 방해 받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가 성립한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것이 면책사유가 되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공표내용의 진실여부를 불문하며 진실인 경우에는 공표 당하고 싶지 않은 사사를 공개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면 권리침해가 성립한 바 이 권리는 명예훼손죄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없는 영역까지 인격을 보호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7) 뿐만 아니라 이 권리는 어떤 사항의 공표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유로운 사생활 영위를 방해 받거나 간섭 당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와 명예훼손의 관계는 양자가 모두 인격권의 침해와 정신적 손해를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동일한 행위가 동시에 양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양자는 성립요건과 면책사유 등에 있어서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3. 언론 자유와 사생활권리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생활하며 현대사회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수단은 언론에 해당된다. 언론은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인간되게 하며 사회로 하여금 가장 사회되게 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경계통이 된다.

언론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자아실현과 진리달성에 기여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합리적 결정과 균형있는 발전이 밑거름이 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특히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중요시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겠다. 언론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는 둘 다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에 동시에 보장되어 있다. 그만큼 언론 자유와 사생활권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중요시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언론자유는 헌법이 제정된 시점부터 보장되어왔고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최근에 헌법적 보장을 받게 된 기본권의 하나이다. 언론자유를 보는 학문적인 관점은 대부분의 경우 다른 개인적, 사회적 법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하는 제 1의 기본권으로 평가되어 왔다.8)

언론자유가 더 많은 나라의 헌법에서 더 먼저 보장되어 왔고 학문적으로도 다른 기본권과 비교해서 「선호된 자유(preferred freedom)」 혹은 「제 1의 자유(first freedom)」로 평가되어 왔다고 해서 그것이 사생활의 권리보다 모든 상황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가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속에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익간에 혹은 권리간에 조화와 절충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의 관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첫째로 언론이란 수 많은 권리와 이익 가운데에서 개인권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이며 두 번째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개인권의 침해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이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그리고 개인적 법익 가운데서 개인적인 법익의 보호를 특히 우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론이란 본질상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신문과 방송은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독자와 시청자를 위해 먼저 존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봉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독자나 시청자를 떠난 신문이나 방송은,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인 차원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를 현재 경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변화로서는 정보사회화, 대중사회화, 그리고 조직사회화 등이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를 사는 개인은 사회가 점차 정보사회화 하고, 대중사회화 하고, 조직사회화 하는 과정에서 수 없이 많은 권리침해를 감당할 수 밖에 없다. 언론은 따라서 국민 개개인을 독자나 시청자단위로 인식하고 또한 그들에 의해서 비로소 언론의 존재 가치가 부여되는 국민적 기관으로서 점차 정보화하고, 대중화하고 그리고 조직화하는 현대사회 속에 보호되지 않고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개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위해 기능하고 역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언론자유와 사생활권리가 본질상 갈등할 수 밖에 없는 소지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언론은 사생활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자유의 영역을 확대해야 하는 책무를 안게 된다.

프라이버시권리가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기본권이고 따라서 언론은 그러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보호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한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프라이버시권리의 침해에는 공표가 존재하며 명예훼손과는 달리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에게 전달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널리 일반공중에게 전달되고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첫째 공표가 개인의 동의에 의한 것일 경우 그 권리는 상실되며 둘째, 그 권리는 본인의 전속적인 것으로 본인 이외의 친근자의 명의로 제소할 수 없으며 셋째, 본인의 사방과 더불어 소권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② 언론의 보도와 논평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프라이버시 권리는 약화된다. ③ 개인의 공적 저명성 혹은 공적 존재성은 그의 사생활의 권리를 부정한다.

III. 언론에 의한 사생활권의 침해

한국에 있어서 언론에 의한 사생활권의 침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고는 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과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결정의 두 가지 사례를 분석했다.

1. 신문윤리위원회 사례분석

(1) 분석방법과 범주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정한 분석기간은 1979년 4월부터 1980년 3월까지의 1년이 되겠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그 기간동안에 발간한 「결정」 제 19집을 대상으로 언론에 의한 사생활권의 침해상해를 분석한 것이다. 사생활권의 침해유형은 프로저 교수가 제시한 4가지 유형, 즉 개인의 사진, 정밀, 혹은 사사에 대한 침입, 개인의 사적 사항에 대해 당혹케 할 공적 폭로, 공중의 눈에 개인을 왜곡시키는 공표, 그리고 개인의 성명 혹은 초상의 영리적 도용 등이 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리는 권리의식의 미분화상태, 법운용의 후진성, 그리고 기본법에 대한 연구의 부족 등으로 체계적으로 유형화되지도 않았고, 제 5 공화국 헌법이 제 16 조에 규정하기까지는 법적인 문제로 제기되지도 못했다. 프라이버시권리는 대부분의 경우 윤리문제로 규정되어 처리되었다.

(2) 주요발견과 제언

윤리위원회가 1년 동안에 심의한 총건수는 185건(기사, 광고포함)이었으며, 이 가운데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사례는 5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프로저교수가 제시한 4개의 유형 가운데 모두가 제 2 유형(public disclosure)에 속했으며 다른 유형의 침해는 전무한 상해로 나타났다. 언론에 의해 침해된 사생활권리의 침해유형을 다시 세분화하면 ①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주소성명의 공개(A형), ② 봉욕한 부녀자의 주소·성명의 공개(B형), 그리고 ③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학교와 이름의 공개(C형)으로 나누어진다. 전체 50건 가운데 A형의 침해는 33건(66%)이며, B형은 16건(32%)이고, C형은 1건으로서 2%에 불과하다.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운데 A형, 즉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주소 성명을 공개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은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 의도적이라기 보다는 무지 혹은 불성실에서 야기되었다고 보아 취재보도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문제시된다고 보겠다. 그리고 C형, 즉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학교와 이름의 공개는 1년 동안에 만 1건밖에 없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의 보호차원에서 문제시 된다고 보겠다.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매체별로 고찰하면 중앙지는 26건(52%), 지방지는 21건(42%), 그리고 통신사는 3건(6%)에 이르고있다. 이것을 다시 세분하면 (표 1)와 같다.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중앙지나 지방지의 경우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지의 경우 신아일보가 유별나게 9건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신아 일보는 지난번 언론기구 개혁 때 폐간 되어서 경향신문에 흡수되었다.

(표 1) 신문·통신사별 침해건수

신문사	건수	신문사	건수	신문사	건수	신문·통신사	건수
동아일보	3	신아일보	9	매일신문	1	강원일보	2
조선일보	1	국제신문	2	부산일보	4	합동통신	2
서울신문	2	경남매일	1	충청일보	2	동양통신	1
한국일보	4	영남일보	2	대전일보	2		
중앙일보	4	전북신문	1	제주일보	2		
경향신문	3	경기신문	2	전남매일	1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상해를 심의결정의 내용차원에서 고찰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매체별 결정내용의 빈도

매체\구분	공 개 경 고	비공개경고	주의	계
중 앙 지	5	11	10	26
지 방 지	7	8	6	21
통 신 사		3		3
계	12	22	16	50

신문윤리위원회가 1년 동안에 심의한 총 50건 가운데 비공개경고가 22건(40%)으로 제일 많으며 그 다음이 주의로 16건(29.1%), 그리고 공개경고가 12건(21.8%)의 순이다. 이것을 유형별 결정내용차원에서 고찰하면(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묘형(봉육한 부녀자의 주소·성명의 공개)이 가장 강한 제재를 받았고 그 다음이 A형(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주소·성명의 공개) 그리고 C형(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학교와 이름의 공개)의 순이다

(표 3) 유형별 결정내용의 빈도

유형 \ 구분	공 개 경 고	비공개경고	주의	계
A형		15	18	33
B형	12	4		16
C형			1	1
계	12	19	19	50

2. 언론중재위원회 사례분석

(1) 분석방법과 범주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3월 31일 발족해서 년 3월 31일로 창립 2주년을 맞이했다. 본 연구는 1981년 3월 31일부터 1983년 3월 31일까지의 2년 기간에 처리된 총 105건의 중재신청사례를 중심으로 언론에 의한 사생활권의 침해를 분석하게 된다. 분석을 위한 범주는 프로저 교수의 4대 형이 되겠다.

(2) 주요발견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해서 처리된 결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매체가 정정을 해 준 것이 전체의 31%인 31건이며, 불 성립이 32%인 34건, 취하가 31%인 32건, 각하가 4%인 4건, 기각이 2%인 2건으로 나타났다.

침해유형별로는 명예 및 사생활침해가 전체의 68%인 72건이며, 신용훼손이 26%인 27건, 저작권침해가 6%인 6건으로 되어있으며, 중재대상은 일간신문이 전체의 55%인 58건으로 가장 많으며, 방송이 15%로 16건, 주간지가 11%인 12건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금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불 성립되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신청을 낸 사례는 모두 8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은 1심에서 원고승소, 3건은 기각판결을 받았으며, 3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다. 9) 언론에 의한 침해유형을 년도별로 고찰하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에는 명예 및 사생활침해가 23건이며, 1982년에는 41건이며, 그리고 1983년에는 8건에 불과하다. 이 경우 조사시간이 연도별로 상이함이 유의되어야 한다.

(표 4) 침해유형과 년도

구분 \ 년도	명예 및 사생활	신 용 권	저작권	계
81	23	15	6	44
82	41	9		50
83	8	3		11
계	72(68%)	27(26%)	6(6%)	105

언론중재위원회가 2년 동안에 처리한 총 105건의 사례가운데 명예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전체의 68%인 72건에 이르고 있음은 언론보도와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 문제시되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언론에 의해서 침해된 명예 및 사생활의 침해건수를 다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의 침해, 그리고 명예 및 사생활의 침해가 세가지 유형으로 세분해 보면 명예훼손에만 관계되는 침해건수는 68 건으로 전체의 94.4%이며, 명예 및 사생활의 침해건수는 4 건에 불과하며, 프라이버시만이 문제되는 침해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명예와 프라이버시권이 동시에 문제시된 4 건의 사례를 프로저 교수의 범주에 따라 분류해보면 모두다 제 2 유형인 원고의 사적인 사항에 대한 당혹케 할 공적 폭로」에 해당된다. 사례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가) 한기석 대 주간중앙의 사건

주간중앙은 가수 심수봉에 관하여 1981 년 6 월 29 일, 1981 년 7 월 12 일, 그리고 1981 년 7 월 19 일 세 차례에 걸쳐서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의 제목은 『심수봉 임신 9 개월 그 동거현장』, 『심수봉과 한도사는 사술에 얽힌 사악의 집시』, 그리고 『남편에게 짓밟히고 심수봉에 당하고 유명희 여인 한 많은 사연』으로 되어있다. 신청인 한기석은 심수봉에 관한 주간중앙의 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고의로 허위로 과장해서 모략적으로 폭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중재를 통해 정정보도하기로 결정했다.

(가) 윤미림 대 일간스포츠의 사건

일간스포츠는 연재물 기획인 『방송야화』를 연재하는데 집필자인 고은정은 인기성우 윤미림의 사생활을 일부공개하면서 개인의 학력 및 사생활을 진실성이 없이 기재했다.(1981 년 11 월 14 일) 이에 신청인 윤미림은 연재물 『방송야화』의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허위로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일부분을 공공연히 보도 · 게재함으로써 사생활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중재를 통해 정정보도하기로 결정했다.

(다) 엄기신 대 주간중앙의 사건

주간중앙은 1982 년 2 월 28 일 『탤런트 엄유신 유부남 병원장과 룸살롱 데이트』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신청인 엄유신은 주간중앙의 기사가 개인의사생활을 추측하고 과장보도하며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고의로 공공연히 보도함으로써 사생활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중재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중재를 통해 『스캔들에 올상짓는 엄유신』 제하에 정정보도하기로 결정했다.

(라) 김정화 대 여성동아의 사건

여성동아는 1982 년 4, 5, 6 월호에 『천재의 불꽃놀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린 평전을 연재했다. 이 평전은 번역문학가인 이덕희가 기고한 것이다. 신청인 김정화는 여성동아의 연재물이 사자의 사생활을 추측 · 허위 보도함으로써 사자는 물론유족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족의 동의 없이 유족의 사진을 공공연히 게재함으로써 유족의 사생활권이 침해되었고 서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중재에 따라 여성동아는 연재중인 전해린평전을 7 월 호에는 휴재하고 8 월 호에는 「평전-아 ! 전해린 천재의 불꽃놀이-안개 속의 인물 장 · 아제베도』라는 제하의 최종회를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게 쓰며, 제 3의 정자에 의해 쓰여진 『전혜린의 인생과 문학-목마른 계절에 핀 야생화』라는 제하의 전혜린 약전을 나란히 게재하기로 합의시켰다.

IV. 맺음말

언론자유와 신장과 개인의 사생활권리의 보호간에는 원천적인 갈등이 내재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조직화되어 있지않은 개인의 권리가 침해 당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고, 수많은 이익과 권리가운데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무를 안고있는 언론의 본질을 고려할 때 언론자유와 사생활권리의 보호라는 명제간에 균형과 조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겠다. 언론자유와 명제는 오랜 기간동안에 많은 국가에서 보장되어 왔으나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최근에 대두된 현대사회의 개념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제 5 공화국 헌법이 1980년에 최초로 명문화해서 보장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시민의 권리로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리의 정립을 위해서는 시민의 권리의식이 발전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언론이 그러한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노력이 급선무인 것 같다. 언론은 신문윤리강령이나 실천요강에서 「타인의 명예와 자유」를 보호하려는 구체적 노력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언론에 의한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는 놀라울 정도로 많다.언론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적인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보도의 부정확성, 불성실성, 선정주의의 추구, 그리고 무책임성에서 야기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부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 언론은 항상 언론자유란 근본적으로 국민에 속해있는 것이지 언론기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며 언론자유와 권리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신장된 일종의 집단권리라는 사실을 되씹을 필요가 있다.

<주>

- 1) Samuel D. Warren,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Vol.4, 1890, pp. 193-220.
- 2) Roberson v. Rochester. Folding Co. (1902)
- 3) Pavesich v. New England Life Insurance Co.(1905)
- 4) William L. Prosser, "Privacy", California Law Review, Vol.48,1960, pp.382-423.
- 5) 정현준, "언론과 실정법", 언론과 법률, 서울 : 한국신문편집인협회, 1967, pp.52-53.
- 6) 서정우 외, 언론통제이론, 서울 : 법문사, 1978, p.121.
- 7)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81, p. 338.
- 8) Bryce W. Rucker, The First Freedom, Carbondale, Ill.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8 이 대표적임.
- 9)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2주년", 언론중재, 통권 6호 1983년 봄, p.7

- 연세대학교, 미네소타대학교 (인문학박사)
- 저술 : 「신문학 이론」 (공저), 「언론통제이론」 (공저) 외 다수
- 현재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